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통시장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및 소상공인경영안정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며, 한시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본부로 재배치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정책실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특구혁신기획단 및 특구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2명(6급 15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0일까지에서 2027년 1월 2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9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9호까지, 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68호부터 제69호까지, 제78호부터 제80호까지 및 제8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3항제11호의2 및 제52호부터 제71호까지 및 제78호부터 제84호”를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67호까지 및 제70호부터 제7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77호”를 “제77호까지, 제81호부터 제8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술혁신정책과, 디지털혁신과”를 “기술혁신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13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16.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20. 중소기업 통합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22.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등 대응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녹색전환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제1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부 소관 금융 및 자금 지원 관련 정책 총괄·조정

제9조제13항제2호 중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중전의 제21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중소기업 디지털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의 기반 조성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

제10조제3항 중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5호를 삭제한다.

3의2.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제11조제3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상공인정책과, 디지털소상공인과”를 “소상공인정책과”로, “불공정거래개선과 및 소상공인제도약과”를 “불공정거래개선과, 소상공인제도약과 및 디지털소상공인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7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민관공동 유망소상공인 발굴·육성·연계

제11조제13항(중전의 제14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연계

12.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운영

제19조의2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①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소상공인경영안정과) ① 소상공인경영안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제6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89”를 “487”로, 일반직 계 “483”을 “481”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6”을 “5”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3”을 “171”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7”을 “29”로, 행정서기·세무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89”를 “487”로, 일반직 계 “483”을 “481”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6”을 “5”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84”를 “182”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6”을 “28”로, 행정서기·세무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6”을 “1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1”을 각각 “395”로,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3”을 “150”으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8”을 “75”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1”을 각각 “395”로,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49”를 “146”으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8”을 “7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474”를 “473”으로, 일반직 계 “126”을 “125”로,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7”을 “26”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474”를 “473”으로, 일반직 계 “126”을 “125”로,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7”을 “26”으로 한다.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1월 20일”을 “2027년 1월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과 중소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8 중 4. 소상공인경영안정과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별표 7]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8]

중소벤처기업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및 제19조의6제2항 관련)

1. 특구혁신기획단장(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특구정책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20
일반직 계	20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의료기술사	13

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

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

3.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4. 소상공인경영안정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

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의료기술사

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

5. 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

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의료기술사

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

[별표 9]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1. 제20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2. 제20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2
일반직 계	2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 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② (생략)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제9호까지, 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68호부터 제69호까지, 제78호부터 제80호까지 및 제84호---.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의2 및 제52호부터 제71호까지 및 제78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67호까지 및 제70호부터 제71호-----.
⑥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72호부터 제77호까지 및 제85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제77호까지, 제81호부터 제83호-----.
⑦ 중소기업정책실에 전략총괄	⑦ -----

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국제통상협력과, 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디지털혁신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및 인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⑧·⑨ (생략)

⑩ 대외환경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기술
혁신정책과-----

⑧·⑨ (현행과 같음)

⑩ -----.

1. ~ 12. (현행과 같음)

1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16.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로드
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
정에 관한 사항

<u><신 설></u>	<u>17.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8.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9.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 정보화 포함) 지원에 대한 중 · 장기계획의 수립</u>
<u><신 설></u>	<u>20. 중소기업 통합 디지털 혁신 (경영정보화 포함)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1.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시행</u>
<u><신 설></u>	<u>22.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3.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등 대응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4. 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녹색전환에 필요한 사항</u>
⑪ · ⑫ (생 략)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⑬ -----

분장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금융 및 자금 지원 관련 정책 총괄·조정</u>
2. <u>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2. <u>중소벤처기업 -----</u> -----
3. ~ 21. (생 략)	3. ~ 21. (현행과 같음)
⑭ ~ ⑯ (생 략)	⑭ ~ ⑯ (현행과 같음)
⑰ <u>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1. <u>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u>	
2. <u>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3. <u>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혁신 방안의 수립 · 시행</u>	
4. <u>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u>	
5. <u>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u>	
6. <u>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문화</u>	

<u>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u>7.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8.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의 가공·분석·유통·활용에 관한 사항</u>
<u>9. 중소기업 디지털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u>
<u>10.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u>
<u>11.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의 기반 조성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u>
<u>12. 중소기업 통합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u>
<u>13.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u>
<u>14.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u>15.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등 대응에 관한 사항</u>	
<u>1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u>	
⑮ ~ ⑳ (생략)	⑮ ~ ⑲ (현행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와 같음)
㉑ 제조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㉑ ----- -----.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설>	21. 중소기업 디지털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설>	22.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의 기반 조성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
㉒·㉓ (생략)	㉑·㉒ (현행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와 같음)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② (생략)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창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 -----.

④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생략)

⑥ 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4. ~ 27. (생략)

⑦ ~ ⑩ (생략)

⑪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6. ~ 21. (생략)

⑫ ~ ⑮ (생략)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생략)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④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 및 제21호-----.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 27.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

1. ~ 14. (현행과 같음)

<삭제>

16. ~ 21. (현행과 같음)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생략)

⑤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정책과, 디지털소상공인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정책과, 사업영역조정과, 불공정거래개선과 및 소상공인재도약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⑥ (생략)

⑦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신설>

⑧ ~ ⑬ (생략)

⑭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⑤ ----- 소상공인정책과-----.

----- 불공정거래개선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및 디지털소상공인과-----.

⑥ (현행과 같음)

⑭ -----.

1. ~ 19. (현행과 같음)

20. 민관공동 유망소상공인 발굴·육성·연계

⑦ ~ ⑫ (현행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⑬ -----.

1. ~ 10. (현행과 같음)

11.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연계

12.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11. (생략)	<u>플랫폼 구축·운영</u>
제19조의2(특구정책과) ① 중소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	제19조의2(특구정책과) ① -----
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 20
② ~ ④ (생략)	26년 12월 31일-----
제19조의3(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① 소상공인코로나19	-----
회복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
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② ~ ④ (현행과 같음)
등급으로 한다.	<삭제>
②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	
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제19조의5(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
	단장) ①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신설>	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의6(소상공인경영안정과)
	① 소상공인경영안정과장은 과
	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두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한시정원) ① ~ ④ 삭제	제20조(한시정원)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⑥ -----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
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	----- 2025년 12월 31
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	일-----
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	-----
다.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	----- 20
25년 1월 20일까지 존속한다.	27년 1월 2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9</u>	• <u>487</u>	-2
일반직 계	• <u>483</u>	• <u>481</u>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 <u>6</u>	• <u>5</u>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 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원	• <u>173</u>	• <u>171</u>	-2
•	•	•	
•	•	•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 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공업연구사	<u>27</u>	<u>29</u>	+2
·	·	·	
행정서기·세무서기·통계서기 ·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7</u>	<u>16</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89</u>	<u>487</u>	-2
·	·	·	
·	·	·	
일반직 계	<u>483</u>	<u>481</u>	-2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u>6</u>	<u>5</u>	-1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 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184</u>	<u>182</u>	-2
·	·	·	
·	·	·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 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공업연구사	<u>26</u>	<u>28</u>	+2
·	·	·	
행정서기·세무서기·통계서기 ·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6</u>	<u>15</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401</u>	<u>395</u>	-6
일반직 계	<u>401</u>	<u>395</u>	-6
·	·	·	
·	·	·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 ·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 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53</u>	<u>150</u>	-3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 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공업연구사	<u>78</u>	<u>75</u>	-3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01</u>	<u>395</u>	-6
일반직 계	<u>401</u>	<u>395</u>	-6
·	·	·	
·	·	·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 ·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 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49</u>	<u>146</u>	-3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 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공업연구사	<u>78</u>	<u>75</u>	-3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74</u>	<u>473</u>	-1
·	·	·	
·	·	·	
일반직 계	<u>126</u>	<u>125</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27</u>	<u>26</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74</u>	• <u>473</u>	-1
일반직 계	• • <u>126</u>	• • <u>125</u>	-1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 • <u>27</u>	• • <u>26</u>	-1
•	•	•	
•	•	•	